

2025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모집공고(5차)

2025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5. 9. 9.

서귀포시장

1. 사업대상자

- 「어선법」 및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른 설비(전기·구멍·소방 및 항해 등 장비)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(설치) 희망하는 어업인으로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 소유자

2. 대상사업 및 사업비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		
		계	보조	자담
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	1식	10,880	6,528	4,352

3.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

- 신청기간 : 2025. 9. 9(화) ~ 2025. 9. 24(수)까지
- 접수기관 : 지구별 수협(사업과)
- 구비서류(사업신청서류)
 - 1) 지원사업 신청서 1부
 - 2) 지방세 납부(완납)증명서 1부.
 - 3)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, 어업허가증,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

4) 조업 및 판매실적 확인 증빙서

-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,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중 택 1

5) 견적서 1부.(수협 기자재 계약단가표 출력물 가능)

6)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 1부

4. 세부사업별 지원 한도

○ 지원율 : 국고보조 30%, 지방비 30%, 자담 40%

○ 지원품목

- 「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」 별표(1)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(기관 제외)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아래 품목

구분	지원품목
소방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동소화시스템 ○ 소방설비(고정·이동·휴대·투척식·에어로졸식 소화기 등) * 2종 자동소화장비(화재탐지기, 자동소화기) 보급.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(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, 화재탐지기,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) * "배전반 자동소화 패치" / 척당 5개 이내 / 지원 한도(척당 2개 품목한도) 미해당
구명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명조끼(어선용 구명의 포함) :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 * (구명조끼) 낚시어선의 경우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시행령 [별표4]에 따름 ** 팽창식 구명조끼 소모품(실린더, 카트리지 등)
전기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전지, 역전류방지장치, 배전반 등
어로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망기 긴급정지장치(휴대용 버튼 5개까지 지급 가능, 설치비 포함 지원) * 「전파법」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설치·보급 ※ 양승기, 양망기 지원불가
항해·무선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무선) VHF-DSC, EPIRB, MF/HF, D-MF/HF, 위성전화 등 ○ (위치) V-PASS, AIS, VHF-DSC, D-MF/HF, INMARSAT 등 ○ (항해) 항해용레이더, Bow(stern) Thruster(잠수기 어선에 한함) * (VHF-DSC)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 * (AIS 전자해양부이) 어구로 인한 추진기 사고 방지용 * (V-Pass 선박자동출항 단말기) 「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e-Nav 단말기 설치가 면제되는 어선에 한하여 지원 * 연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조업하는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허가 어선과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선에 한하여 장거리위치발신기기(D-MF/HF) 지원가능

※ 「어선법」 및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(기관 제외)

○ 지원한도

- 지원품목·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내에서 지원(모든 설비는 설치비를 포함)

-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가능, 다만, 2톤미만 어선의 소화기는 추가하여 지원 가능

***팽창식 구명조끼의 경우 도 수산정책과의 한시적 보급사업으로 인하여 보급 불가**

5. 사업자선정 우선순위

-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,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함
- 가. 1순위 : ~~평창식 구명조끼(조끼형·벨트형) 및~~ 2톤 미만 어선의 소화기
- 나. 2순위 : 어선용품(기관 제외)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품목 중
 - 허가어업 어선
 -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우선
 - 구명·소방·무선설비 등(AIS전자해양부이 포함) 어선안전 장비(설비) 설치 희망 어업인
- * 면허어업 어선 등은 후순위

6. 지원대상 제외

- 선정 제외 대상
 -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
 - 최근 3년 이내(직전 연도말 기준) 수산관계법령*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
 - *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
 -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
 -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
 - * 기 지원받은 장비·설비 등은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
 -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(감척대상 어선,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,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)
-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
 -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-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
7. 기타사항

- 세부지원 기준 등은 2025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지침에 의함.
 - 우선순위 증명서류 및 견적서는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함.
 - 2025년 본예산으로 최초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집행주체(서귀포시)에서 정한 기한 내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착공계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귀포시장은 직권 취소할 수 있음
- ※ 기타 문의사항 : 서귀포시 해양수산과(760-2751~2)

<붙임> :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<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 >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 -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·융자 등의 사업추진시,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 -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주소 및 연락처 등)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- 해양수산 보조·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<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 수집·이용 동의 사항 >

1.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 -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·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, 신청자의 본인확인,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,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
2.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
 -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
3.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- 해양수산 보조·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<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>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 - 해양수산 보조·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 - 해양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 -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주소 및 연락처 등)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 - 해양수산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